

# 국무조정실

우110-760 /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015호 / 전화 738-0238 (행)3877 / Fax 732-7158  
경제조정관실 산업심의관실 과장 권태성 사무관 김달원 E-Mail orion@opc.go.kr

문서번호 산업 06000-55

시행일자 2003. 7. 9.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보존기간	5년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개	
장관	권태성	3년
조정관	박중국	
심의관	이주희	
과장	권태성	총괄심의관 7653
기안	김달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3-9호) 시달

1. 국무총리지시 제2002-4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2002.4.4)」 와 관련입니다.

2. 정부시책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동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토록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동 지침을 개정·시달하니 각 기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3-9호) 1부. 끝.

## 국무총리

수신처 : 가(23~31, 41~58, 71~86), 나(01~07, 10~18), 다(01~07, 10~18),  
마(01, 02, 03, 06, 08, 09, 11~17, 19, 21, 24, 31, 32, 33)

국무총리지시 2003-9호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2003. 7. 9.

국무조정실

## 1. 목 적

-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기본방향

-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
  - 에너지관련 정부 예산부담 최소화
  -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
  -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
-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
  - 공공기관의 정책수행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
  -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

## 3. 추진체계

- 국무조정실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
  -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 산업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보고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시행
  - 각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
- 에너지관리공단 : 지침 이행실태 조사 및 평가업무 실무 지원

-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
  - 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조례 및 규정) 정비
  - 소속·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총괄조정 및 감독

#### 4.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교육시설포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자본금의 50%이상)한 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본금의 50%이상)회사

#### 5. 추진내용

##### 공통부문

##### 가.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 각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이상 위원회를 개최
  -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
-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지정·운영
  -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를 지정·운영
    - (담당부서는 총무과 또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43개기관(178개소), 지방자치단체 16개기관(69개소), 시·도교육청 16개기관(25개소), 정부투자·출연기관 19개기관(21개소)  
※2001년 추진실적 기준

## **나.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 관리**

- 2000년도 연료 ·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10%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 1차기간('98~2000)중 5%를 초과한 절감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2차기간(2001~2003)중 5%를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차등 추진(1차기간중 절감실적은 2000년도 하반기 정부합동점검결과에 의거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름)
  - 절감목표 설정시, 2000년도 에너지사용량 기준이외에 기관 · 소속 건물별 에너지원단위(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지표 병행 사용
  - 시설의 신축과 중 · 개축 및 에너지사용설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매년도 절감목표를 기관별로 신축적으로 설정 · 추진

## **다.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

- 에너지절약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
  - \*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 (별표 1)

## **라. 소속 ·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 감독**

- 각 중앙행정기관, 시 · 도, 시 · 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소속 ·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조정 및 지도 · 감독 의무화
  -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지도 · 점검 의무화
  - 소속 ·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 평가 및 개선조치
  - 에너지절약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건물부문

###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건축물 연면적이 3,000m<sup>2</sup>이상인 본청,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단계적 개체
  - 소속건물들의 단위건물규모가 작아 ESCO사업 경제성이 낮은 기관은 여러 소속건물들을 통합하여 종합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

### 나.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모든 공공건물은 신축(중·개축 포함) 또는 기기교체 등으로 인한 구매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의무화

### 다. 에너지관리진단의 내실화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관리 공단 등에 에너지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 방안을 발굴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동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 나.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현행) “모든 --- 신축(중·개축 포함)시, ----- 의무화”에서 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범위를 확장하여 보급촉진에 기여

-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단 실시
-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사업 또는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

#### 라.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

- 모든 공공기관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사용설비별로 설치
- 건물내 무인 자동판매기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차단용 타이머」를 부착하여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
-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
  -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의무화
-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등 합리적 운행
  - 3층이하 운행금지(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승강기 제한운행
  - 10층이상 건물은 일정층 이상·이하로 구분하여 승강기 운행 등
- 빙축열·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절감 도모
-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냉·난방온도 관리
  - 난방온도 : 18~20°C, 냉방온도 : 26~28°C

## **마.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

- 신축건물에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 신축(증·개축 포함)하는 모든 공공건물의 변기 및 수도꼭지는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
  - \* 수도법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변기는 '98. 3부터, 수도꼭지 및 샤워기는 2000. 1부터 절수형으로 설치 의무화
- 기존건물에 대한 물 절약 사업 추진
  -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 노후된 옥내 수도관 교체,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중수로 재이용 등 물 절약 사업 추진

## **바.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추진**

- 모든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사용을 의무화

## 수 송 부 문

### 가.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

-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비의 지속 추진
  - 통행료 감면범위 확대(고속도로 → 전국 유료도로) 및 책임·종합보험료 인하 조정 유도
  - 10부제 등 차량운행억제 조치 완화
-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
  - 관내 민영주차장에도 경차 지원 권고
-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
  -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경차 우선구매 권고
- 각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전용주차장을 5%이상 설치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
  - 경차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경차” 표시

### 나. 승용차 운행 자체방안 강구

- 각 공공기관은 부제운행(10부제, 5부제, 주 1회 휴차제 등) 실시 의무화
  - 다만, 각 기관별 설정을 감안하여 부제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가능
-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비율(1%~3%) 및 국내경차보급 현황(7.6%, 2002년)을 고려하여 경차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을 명확히 함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 시행
  -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
  - 통근버스 확대운영, 인근 기관과 통근버스 카풀제 운영 등 추진
- 부제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승용차 운행자제 기업 및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 **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

-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시설 확대 설치
  -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추진
- 각급 도로의 신설 · 확장 · 재정비시 자전거도로 확보

#### **교육 · 홍보부문**

##### **가.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포함**

- 각종 공무원교육시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과목의 반영
-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강화

##### **나.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홍보의 강화**

- 각 기관별 홍보 · 출판물에 에너지절약 내용 포함
-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실시
- 환경 · 교통 등 정부시책 홍보시 에너지절약내용 연계 추진

## 6. 행정사항

### 가. 각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 각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에너지 절약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다만, 정부 중앙·과천·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문·승용차운행 자체방안 등은 행정자치부가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연도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
  -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절약실적을 자체 점검 및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

### 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

- 각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의 장, 시·도교육청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장은 자체,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평가)을 종합하여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보고)
  - 제출대상기관 : 각 중앙행정기관(가23~가86), 시·도(나01~나18), 시·도교육청(다01~다18),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마01~마33)
    - ①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 연면적 10,000m<sup>2</sup>이상인 건물 까지의 내용을 취합하여 직접 보고. 다만, 초·중·고교 및 군부대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 ②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은 청사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실적·계획을 제외한 기타 사항과 소속·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계획을 취합 보고

- 제출시기 :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전년도 에너지절약 추진 실적(평가)을 당해년도 2월 말까지
  - 제출서식 : (별표 2)
  - 제출방법 : 서류제출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전자민원 처리서비스(<http://www.kemco.or.kr/eservice>)를 통하여 자료제출
- 소속·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평가)은 위의 제출 대상기관의 장이 종합 관리
- /

#### 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및 수범사례 발굴 확산

-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동점검반을 편성, 연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
-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 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 평가결과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보고
  - 매년 평가결과와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부

#### 라. 기타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지시 제2002-4호('02.4.4)는 폐지

- 
- 전년 사용실적의 고지 시점을 고려하여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제출방식을 개선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보고대상기관의 편의 도모

[ 별표 1 ]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체계 구축 및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 관리</li> <li>○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li> <li>○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li> <li>○ 소속 · 산하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 · 감독</li> <li>○ 에너지절약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li> <li>○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의무화</li> <li>○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li> <li>○ 신축건물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등 물 절약방안 추진</li> <li>○ 업무용차량의 경차구매 유도 및 경차의 10부제 면제 등</li> <li>○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li> <li>○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 시책의 정비</li> </ul>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정책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li> </ul> </li> </ul>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관 · 단체 경영평가 지침에 에너지절약 추진성과 반영기준 상향조정</li> <li>○ 예산지침 작성시 업무용차량 경차구입을 유도</li> <li>○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지원</li> </ul>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제 개편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책 강화</li> </ul>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보험료 경감지원</li> </ul>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청사에 대한 건물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시행</li> <li>○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시, 에너지절약 관련내용 반영 노력</li> <li>- 반상회보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li> </ul> </li> <li>○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사항 확인 및 독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추진 권고</li> </ul> </li> </ul>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li> <li>○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li> <li>○ 에너지절약 홍보강화를 위한 민간기관·단체와의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 홍보·교육 지원(수범사례집 발간 배부)</li> </ul> </li> <li>○ 성과배분계약제도 등 에너지절약시책 개발·보급</li> <li>○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 방안 강구</li> <li>○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 절약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li> <li>○ 공공기관 물 절약시책 수립·시행·점검·평가·보고(산업자원부에 협조)</li> <li>○ 기타 물 절약과 관련된 각종 업무 추진</li> </ul>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제, 차고지 증명제등 차량운행 제한조치 추진시, 경차에 대하여 완화적용</li> <li>○ 에너지절약관련 법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사항 협조요청</li> <li>○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지속적 추진</li> </ul>

기 관	주 요 조 치 사 항
조 달 청	○ 고효율기기 구매 ·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교 육 부	○ 각급 학교의 고효율기기 개체 추진 ○ 교원 교육시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 초 · 중 · 고 교과서에 에너지절약내용 반영
기술품질원	○ 고효율기기의 한국산업규격 제정 확대
지방자치단체	○ 에너지절약관련 조례 제 · 개정 ○ 버스 전용차선제의 확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확충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추진 ○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대 확대 설치 ○ 공영주차장에 대한 10부제 실시 및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등 추진 ○ 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업무용차량 구입시 경차 우선 구매 ○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 참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u>건축허가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 이행여부 확인</u>

[ 별표 2 ]

## ○○○○년도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제출)

### I. (○○○○)년도 에너지절약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 1. 주요 추진실적

##### 가.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기 관 명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개최실적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위원장	위원수	개최일시	주 요 내 용	

##### 나. 에너지사용실적

###### ○ 기관별 에너지사용실적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에너지원별	사 용 량	원단위(kgoe/m <sup>3</sup> 년, kWh/m <sup>3</sup> 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합 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 다.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 정비

기 관 명	제도 및 시책	추 진 내 용

#### 라. 소속·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

기 관 명	점검일자	점 검 평 가 및 수 범 사례

#### 마. ESCO사업 추진실적

기 관 명	타당성 미실시	청사 이전 계획	E S C O 추 진				자체사업추진 등		사업 추진 내역	비고		
			타당성검토시행건물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중	투자사업 완료	자체 예산	신축건물로 고효율기자재 기적용				
			사업가능	사업불가능								

주. 1) '비고'란에는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격시 사유 명시(예 : 경제성 미흡)

2) 해당란에 "○" 표시

### 바. 에너지관리진단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진단설시기관	진단시기	진단시 제시된 개선방안

### 사. 물 절약 추진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수돗물 사용량(m <sup>3</sup> /년)	당해기간 근무인원(명)	수돗물 사용원단위(m <sup>3</sup> /명.년)

### 아. 경차보급 활성화 및 승용차 자체방안

기 관 명	승용차보유현황		○○○○년도 승용차구입		부 제 실 시			비 고
	총수(대)	경차수(대)	총구입수(대)	경차구입수(대)	부제실시 내용	참여차량 인센티브	위반차량 벌칙	
합 계								

주) 부제 실시내용 기재 예시 : 10부제, 5부제 등

## 2. 주요 추진실적 자체평가

### 가. 추진실적 평가

잘된 점

-

미흡한 점

-

### 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3. 건의사항

# II. ○○○○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 1. 추진목표

기관별 특성을 감안,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

- 에너지절약목표 달성방법 등 포함, 구체적으로 작성

### 2. 세부 추진계획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거, 부문별로 작성

### III. 일반현황

#### 1) 기관현황

소속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 2) 건물현황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준공년도	2000년도(기준)		2003년도(계획)		면적증감사유
		연면적(m <sup>2</sup> )	냉난방면적(m <sup>2</sup> )	연면적(m <sup>2</sup> )	냉난방면적(m <sup>2</sup> )	
합계						

주) 자체건물(임대건물 제외)로 연면적 10,000m<sup>2</sup>이상인 기관만 기재(이하 같음)

## IV.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 1) 에너지사용량 목표 설정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구 분 (에너지사용량)	기준년도 (2000년)	에너지사용량 목표 설정치		
			2001년	2002년	2003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합 계	연료(kgoe/년)				
	전력(kWh/년)				
	에너지(kgoe/년)				

주. 1) 연료사용량은 석유환산기준을 참조하여 석유환산량으로 표기하며 수송(차량)용은 제외함.

2) 에너지사용량(kgoe/년) = 연료사용량(kgoe/년)+전력사용량(kWh/년)×0.25

### 2) 에너지원단위 목표 설정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구 분 (에너지원단위)	기준년도 (2000년)	에너지원단위 목표 설정치		
			2001년	2002년	2003년
	연료원단위(kgoe/m <sup>2</sup> 년)				
	전력원단위(kWh/m <sup>2</sup> 년)				
	에너지원단위(kgoe/m <sup>2</sup> 년)				
	연료원단위(kgoe/m <sup>2</sup> 년)				
	전력원단위(kWh/m <sup>2</sup> 년)				
	에너지원단위(kgoe/m <sup>2</sup> 년)				
	연료원단위(kgoe/m <sup>2</sup> 년)				
	전력원단위(kWh/m <sup>2</sup> 년)				
	에너지원단위(kgoe/m <sup>2</sup> 년)				

주. 1) 연료원단위(kgoe/m<sup>2</sup>년) = 연료사용량(kgoe/년) ÷ 당해년도 냉난방면적(m<sup>2</sup>)

2) 전력원단위(kWh/m<sup>2</sup>년) = 전력사용량(kWh/년) ÷ 당해년도 연면적(m<sup>2</sup>)

3) 에너지원단위(kgoe/m<sup>2</sup>년) = 연료원단위(kgoe/m<sup>2</sup>년) + 전력원단위(kWh/m<sup>2</sup>년)×0.25

### 3) 물 절약 목표 설정

본청(사) 및 산하건물명	구 분	기준년도 (2000년)	물 사용량 목표 설정치		
			2001년	2002년	2003년
	수돗물 사용량 (m <sup>3</sup> /년)				
	당해기간 근무인원 (명)				
	수돗물 사용원단위 (m <sup>3</sup> /명.년)				
	수돗물 사용량 (m <sup>3</sup> /년)				
	당해기간 근무인원 (명)				
	수돗물 사용원단위 (m <sup>3</sup> /명.년)				

비고 : 1. 수돗물 사용량 합계(m<sup>3</sup>/년) : 당해 기간의 상수도요금 고지서상의 사용량 합계  
 2. 수돗물 사용 원단위(m<sup>3</sup>/명.년) : 수돗물 사용량(m<sup>3</sup>) ÷ 당해기간 근무인원

※ 2000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5%이상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  
 하되, 기관별로 매년 절감목표를 신축적으로 설정 가능

※ III. 일반현황 및 IV.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은 2001년 제출된 내용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변경사유와 함께 전년도 실적제출시 함께 제출

【참고】

## 석유환산기준

○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관련

구 분	환 산 기 준		석 유 환 산	
	단 위	발 열 량	단 위	환 산 계 수
석유류	원 유	kcal/kg	10,000	kg/kg
	휘발유	kcal/l	8,300	kg/l
	납사	kcal/l	8,000	kg/l
	등유	kcal/l	8,700	kg/l
	경유	kcal/l	9,200	kg/l
	방카A유	kcal/l	9,400	kg/l
	방카B유	kcal/l	9,700	kg/l
	방카C유	kcal/l	9,900	kg/l
	제트A-1	kcal/l	8,700	kg/l
	J P - 4	kcal/l	8,500	kg/l
가스류	프로판가스	kcal/kg	12,000	kg/kg
	부탄가스	kcal/kg	11,800	kg/kg
	도시가스	kcal/Nm³	7,000	kg/Nm³
	도시가스	kcal/Nm³	11,000	kg/Nm³
	도시가스	kcal/Nm³	15,000	kg/Nm³
	천연가스	kcal/Nm³	10,500	kg/Nm³
	천연가스	(kcal/kg)	(13,000)	(kg/kg)
석탄류	무연탄	kcal/kg	4,500	kg/kg
	유연탄	kcal/kg	6,600	kg/kg
	코크스	kcal/kg	6,500	kg/kg
기타	전기	kcal/kWh	2,500	kg/kWh
	신탄	kcal/kg	4,500	kg/kg

- 비고 : 1. 석유환산기준은 원유(1kg=10,000kcal로 환산)로 기준한 것임.  
 2.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제1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주관자의 신고 및 에너지관리 대상자 지정을 위한 기준임.  
 3. 최종 에너지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 = 860kcal를 적용한다.  
 4. 도시가스 발열량은 공급회사별로 발열량의 차이가 있음.